

『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 해제 청원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청 원 자 : 구미시 원평동 325-1번지 임상분 외 23명

2. 소개의원 : 구미시의회 의원 한정우

3. 청원사유(내용)

- 지산동 594-21번지 외 36필지는 원평동과 지산동, 신평동과 지산동도량동과 지산동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접하고 있고, 1973. 12. 31. 도시계획시설 “광장, 녹지”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집행 되어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 본 필지만으로 “광장, 녹지” 지역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당초 지정 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청원함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
- 「지방자치법」 제73조
-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5. 검토의견

- 본 청원은 구미시 지산동 325-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광장) 해제 요청 건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미이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방지 및 대책 수립 요구인바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구미시의 장기도시기본계획과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됨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 녹지) 해제 청원』

의견서(안)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 공원 등 각종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

구미시 지산동 594-21번지 외 36필지(27,860m²) 토지는 1973. 12. 31 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미시행으로 토지이용도의 저하 등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본 청원을 구미시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함

다 음

- 구미시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후 장기 미집행 시설인 지산동 도시계획시설(광장)부지 소유자들의 35년간 장기간의 사유 재산권 피해와 고통을 감안,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재정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신중을 기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공람과 의회의 의견청취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계획시설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이며,
-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매년 매수 청구 건수와 보상금 집행액 증가에 따라 이는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요 불급한 시설은 면밀한 검토와 과감한 결단을 통하여 조정해 나갈 것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2008. 12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